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농 립 축 산 식 품 부 와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중대재해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질병 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4명(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5명(9급 5명)을 감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이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4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고, 환경부와의 협업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환경부 소속 연구관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한시정원 1명(환경부 소속 5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였던 농약의 유통단계 품질·유통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농촌진흥청의 정원 1명(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에 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

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2) 입법예고(2023.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약의 유통단계 품질·유통관리, 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45조제1항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4년 2월 28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연구관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별표 2 중 총계 “636”을 “637”로 하고, 일반직 계 “632”를 “63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2”를 “613”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삭제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00000호 농촌진흥청
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으로 보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한다.

[별표 6]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5조 관련)

1. 제45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2월 28일)

총계	3
일반직 계	3
4급 또는 5급 이하	3

2. 삭제

3. 제45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연구관	1

4. 제45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연구관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직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이하 이 장에서 “농관원”이 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 다. 1. ~ 9. (생 략) <u><신 설></u>	제25조(직무) ----- ----- ----- --. 1. ~ 9. (현행과 같음) <u>10. 농약의 유통단계 품질 · 유통관리, 항공방제업 신고제 및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에 관한 사항</u>
제45조(한시정원) ① 농식품 분야 신 · 재생 에너지 발굴 및 이용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3년 2월 28일까지</u>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 부에 둔다. ②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업무 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 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5급 1명)은	제45조(한시정원) ① ----- ----- ----- ----- ----- <u>2024년 2월 28일</u> ----- ----- -----. <u><삭 제></u>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생략)

<신설>

③ (현행과 같음)

④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연구관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36</u>	<u>637</u>	+1
•	•	•	
•	•	•	
일반직 계	<u>632</u>	<u>633</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12</u>	<u>613</u>	+1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6